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 설치의무가 부여되는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설치허가를 신청한 대상 사업장 등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인 경우 신청 등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등 일부 서류는 같은 법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12. ~ 6.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 12. 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각각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다.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변경허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허가	1. 다음 각 목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나.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라.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마.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바.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원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합니다)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생 략)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② (생 략)	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 다만,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6항 ----------.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6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법 제15조제6항 ----------. 다만, 신고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로 한정한다)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3. ---------- 제7호까지의 서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 ---------- 제8조제4항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5조(수수료)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4. 법 제15조제6항 ---------- --------